

화순군오수.분뇨.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

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0. 10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0. 10

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0. 20

(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환경과장 김 재 월

나. 개정사유

-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회.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규제 개혁 표준모델안을 적용 상위법과 중복된 규제를 삭제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동 조례 제17조(가축 사육자의 의무)삭제

제16조제2항 각호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가축배설물의 제거 및 수질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
2. 축산폐수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위한 축사내의 청결유지
3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 사육자로 하여금 주위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준수토록한 의무사항을 삭제키 위한 조례안으로써,

- 가축사육자의 의무로 규정했던 가축배설물의 제거를 위한 정화시설의 설치 및 축사내의 정결유지등의 사항은 오수.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의 “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”등의 규정과 수질환경 보전법 제29조 “배출등의 금지”규정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.규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규정의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
- 입법 예고 및 조례.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차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**첨 부 : 화순군오수.분뇨.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
중개정조례안**

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(가축사육자의 의무) 제16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환경과 군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축 배설물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<u>정화시설 설치</u> 2. 축산폐수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위한 축사내의 <u>징결유지</u> 3. 기타 <u>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</u> 	<p>제17조(가축사육자의 의무) 삭제</p>